

부산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409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고, 피항소인 1. B

2. 의료법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16.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2179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3,527,810원, 피고 의료법인 C은 3,263,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33,527,810원, 피고 의료법인 C은 3,263,9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보전의 필요성 여부

한편 원고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한 사람에 대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어서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정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보험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만연히 원고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원고가 채무자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현, 판사 이은명, 판사 오영두